##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891

발의연월일: 2024. 9. 11.

발 의 자:이학영·정태호·임광현

임호선 • 이정문 • 진선미

정준호ㆍ허 영ㆍ한정애

강득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의 한 연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해당 국가 토착 조류의 약 30% 이상이 건물에 부딪혀 죽었다고 보고되었고, 우리나라 에서도 국립생태원 조사에서 연간 780여 만 마리의 조류가 인공구조 물 충돌로 폐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조류충돌 저감 대책이 담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틀이 마련되었으나 공 공기관 등의 소관 인공구조물에 한하여 야생동물 충돌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설치·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어 충분한 야생동물 보호에 는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방음시설 설계·시공단계에서 야생동물 피해 저감조 치를 고려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등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방음시설에 한해서는 설치 범위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여 방음시설에 의한 야생 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40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 소음 · 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 · 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있도록"을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로 인한 충돌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음시설을 시공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① 소음을 방지하기	기준 등) ①		
위하여 방음벽・방음림(防音林)			
· 방음둑 등의 방음시설을 설			
치하는 자는 충분한 소리의 차			
단 효과를 얻을 수 <u>있도록</u> 설	<u>있</u> 도록 하고,		
계·시공하여야 한다.	해당 시설로 인한 충돌 등의 야		
	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		
	<u>도록</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60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u>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4.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		
	음시설을 시공한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